

인간의 존재방식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

문 동 규*

Contents

- I. 시작하는 말
 - II. 인간의 일상적인 삶 : 비본래적인 실존
 - III. 인간의 존재방식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
 - 1. 인간의 존재방식과 법치, 입법의 문제
 - 2. 인간의 존재방식을 고려한 입법
 - IV. 맺는 말
-

* 순천대학교 강사

I. 시작하는 말

지난 4월 25일은 우리나라 제 55회 '법의 날'이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그날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기념식에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공정한 법치',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법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법치'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¹⁾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섰을 때 가능하다"며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²⁾

제 55회 '법의 날' 기념식 행사의 주제도 좋고, 장관의 말도 좋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정한 법치, 사람 중심의 법치',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통해 정의가 회복되는 법치 사회', 얼마나 좋은 말들인가? 물론 이러한 것은 '법'을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나타난 말이라. 그러나 4월 25일이 우리나라 '법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 '정의로운 사회 내지는 나라'란 법의 지배가 바로 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도 궁금하다. 사실 한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과 '법치'는 중요한 일이다. 그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소식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법을 위반한 기득권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악행 때문에 말이다. 그렇다면 '법의 날' 기념식 행사의 주제와 법무부 장관의 말을 따를 때 이들에게 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치가 적용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앞듯이 대개 '법'이란 인간 행위를 강제하고 그 행위에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이 인간 행위를 강제하고 간섭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법이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말이라. 그래서 법의 문제 또는 입법의 문제에 있어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다양하다.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다는 것이다.

1) 대한변협신문, 2018.04.30 09:32:31 기사.

2) 대한변협신문, 전계기사.

이들테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프로타고라스), 합리적인(이성적) 동물,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 상징적 동물(카시러), 제조하는 인간, 생각하는 갈대(파스칼), 결핍존재(겔렌) 등등 말이다. 그리고 개별학문들에 따라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사회학은 사회적 동물로, 역사학은 역사적 동물로, 심리학은 심리적 동물로, 윤리학은 평가적이고 당위적인 동물로 여기고, 종교학은 인간을 신앙의 입장에서 보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그러한 정의들은 거의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³⁾ 인간은 현실 속에서 '격차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⁴⁾ 그런데 법의 문제 또는 입법의 문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다면, 법의 문제 또는 입법의 문제는 바로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 상황, '인간의 존재방식'인 '실존(Existenz)'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아니 실존의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입법의 문제에서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실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방식인 실존의 문제를 매우 심도 있게 보여주고 있는 자는 바로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하이데거(M. Heidegger)다.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즉 인간의 존재방식을 하이데거의 저술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것도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을 우선 살펴보고, 그런 후 인간의 존재방식(본래적인 실존방식과 함께)과 입법의 문제를 다루어보도록 할 것이다. 물론 존재론자인 하이데거는 '법' 또는 '입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⁵⁾ 그러나 우리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그리고 있는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3)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4)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SZ)*, Frankfurt a. M.,: Vittorio Klostermann, 1977, S. 168.

5) 그러나 최종고는 하이데거 철학에서 법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본래적 삶의 퇴락 형식, 즉 '세인'으로 전락한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분석뿐이라고 말하고 있다.(최종고, 「법과 존재와 사유-법철학에 미친 하이데거의 영향-」, 「현대유럽철학연구」 9, 한국하이데거학회, 2004, 73면) 이에 이 글에서 필자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 비본래적 실존 방식을 다루고 난 후, 법의 문제가 이 실존 방식에서 이야기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데거와 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고의 앞의 글, 72면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하이데거가 그리고 있는 인간의 존재방식인 비본래적 실존과 본래적인 실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입법자들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II. 인간의 일상적인 삶 : 비본래적인 실존⁶⁾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방식은 '실존'⁷⁾이다. 이때 실존은 '존재가능(Seinskönnen)'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본래적 실존'과 '본래적 실존'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존재가능성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에 따라 '비본래적 실존'이 나타나고, 둘째, 본래적이고 고유한 자기 자신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에 따라 '본래적 실존'이 나타난다.⁸⁾

실존이 이렇게 '비본래적 실존'과 '본래적인 실존'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개 어떤 존재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존재가능성을 본래적이고 고유한 나 자신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인'⁹⁾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에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즉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격차성', '평균성', '평준화'라는 존재성격을 살펴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6) 이 부분은 필자의 다음의 글, 문동규, "일상에서 이상으로", 『철학논총』 제60집, 새한철학회, 2010, 180-185면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7) '실존(Existenz)'은 대개 '실제적 존재' 내지는 '사실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적 존재'와 '이념적 존재', 또는 '본질적 존재'와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실존'을 현실 속의 '구체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실존'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방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인간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능(존재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한다.(이기상·구연상, 『「존재와 시간」 용어 해설』, 까치, 1998, 163-164면 참조)

8) 문동규, 전개논문, 189-181면 참조.

9) 여기에서의 '세인'은 '의명의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세인은 "중성자(das Neutrum, 불특정 다수)"(SZ, p.169)이다. 이때 '불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독일어 'man'은 대개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 이라고 말한다(man sagt daß -)', 또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man muß es tun)'와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다.(마크 A 래틀 지음, 권순홍 옮김, 『How to Read 하이데거』, 웅진 지식하우스, 2008, 97면 참조)

우선 '격차성'이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과 남들과의 '격차'에 서로 잡혀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성격을 말한다. 우리가 보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과 함께, 남들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때 우리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말하자면 익명의 세상 사람들인 '세인'이 제공하는 세간적인 가치에 따라 자신이 자기 아닌 타인보다 우월하다거나 우월하지 않다는 '격차'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물론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많은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 차이 나는 격차를 줄이려고 애를 쓰며, 남들과 큰 격차가 없으면 그 차이 나는 격차를 더 늘리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격차'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격차성'이라는 존재성격이다.

그런데 이러한 격차성이라는 존재성격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드러날까?¹⁰⁾ 경쟁과 노골적인 혹은 은밀한 시기심이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위 하는 '주체'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때의 '주체'가 '고유하고 진정한 나 자신인지 아닌지'이다. 사실 격차성에 시달리고 있는 삶에서의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익명의 세인에 불과하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고 독특한 주체로 여기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세인이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의 '세인'으로 사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¹¹⁾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서 세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해석이 적어도 세인들이 무언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음을 말한다. 말하자면 세인들의 뜻과 의지가 일상적인 나의 삶의 가능성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취미활동과 화젯거리, 우리의 음식거리와 옷을 입는 스타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직업 및

10) 박찬국,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의주의로 보는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사상」 제30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175면 이하 참조.

11) SZ, S.169 이하 참조.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세인들이기 때문이다.¹²⁾ 그래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 현존재는 우선 이러한 일상적인 피해석성 속으로 성장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¹³⁾

이렇게 세인들의 뜻과 의지에 의해 규정되는 삶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의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러한 기준을 벗어난 모든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이 기준이 바로 ‘평균성’이라는 존재성격이다. 그러나 그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중의 의문이다. 사실 그 기준은 사람들이 ‘타당하게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것’,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공을 인정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¹⁴⁾ 그런데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든 우위는 경계되어 소리 없이 억압되고, 모든 근원적인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힘들게 쟁취한 모든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으로 간주되고, 비밀스러운 모든 것은 그 힘을 상실한다.’¹⁵⁾ 따라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평균성’이라는 존재성격의 영향 아래 우리가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모든 존재가능성들을 ‘평준화’하고 만든다.¹⁶⁾

이러한 일상적인 존재성격들, 즉 ‘격차성, 평균성, 평준화’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공공성(Öffentlichkeit)’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구성하고, 이것을 통해 소위 ‘세론’이 형성된다. 이때 이 세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해석을 규정하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세론에 의해 인간이 일상적인 삶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 내지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존재 부담으로부터 면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렇게 행위 해야 하고, 모두 다 그렇게 행위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 비본래적인 실존의 실질적인 주체는 ‘세인’, 즉 ‘본래적이고 고유한 자기’가 아니

12) 마크 A. 래틀 지음, 전계서, 103면 참조.

13) SZ, S.225.

14) SZ, S.169 참조.

15) SZ, S.169 참조.

16) SZ, S.169 참조.

17) 문동규, 전계논문, 184면 참조.

라 “세인-자기”이다.¹⁸⁾

이렇게 인간이 세인-자기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본래적 실존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비본래적인 실존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러한 실존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삶이 격차성과 평균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삶에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그것은 격차성과 평균성이라는 인간의 일상적인 존재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보듯이 일상적인 삶에서 인간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주체로 살고자 할 때, 그러한 행위는 언제나 타인과의 비교와 격차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삶에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주체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란 고유하고 본래적인 나 자신에게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인이 추구하고 제시하는 가치나 기준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 불과할 것이다.¹⁹⁾

이상과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비본래적’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때 ‘비본래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고유하고 본래적인 가능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인들이 추구하고 제공하는 세간적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말하자면 세인이 행하는 바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나의 삶의 주체는 고유하고 본래적인 나 자신이 아니라 역명의 세상 사람들인 세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으로 살아가는 비본래적인 삶이다.

18) SZ, S.172.

19) 박찬국은 세인이 제시하고 추구하는 가치 또는 기준이 각 개인의 ‘진정한 성숙과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진정한 가치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세인이 제시하고 추구하는 가치 또는 기준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과 시기심을 유발하고, 탁월하고 예외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때 그러한 가치와 기준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박찬국, 전개논문, 180면 참조)

Ⅲ. 인간의 존재방식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

1. 인간의 존재방식과 법치, 입법의 문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대개 '비본래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고유하고 본래적인 자기 자신에게서 선택하지 않고 세인에게서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행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정한 주체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단지 세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어떤 것으로부터의 강제와 간섭이 없는 상태인 자유 말이다.²⁰⁾ 그러나 사실 인간의 자유 실현이란 고유하고 본래적인 자기의 선택에 의한 존재가능성이 발현될 때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인간의 본래적인 실존방식에서 이끌어낸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에서의 자유²¹⁾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서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세간적 가치와 세론에 의존하고 살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도 간섭받고 살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자유,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자유 등등과 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자유는 인간의 존재방식인 본래적인 실존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의 본래적인 삶은 본래적인 실존방식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할 때, 그 도와줌의 문제는 인간의 존재방식 중 하나인 '배려(Fürsorge)', 그것도 '진정한 배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정한 배려'는 도와주는 자와 도움 받는 자의 본래적이고 진정한 '자유'와 연관되어 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

20)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와 간섭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경식, "자유와 간섭-자유성과 선의의 간섭주의", 「철학사상」 제1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1991.

21) 이때의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자유'의 결론적 형태인 '자유', 즉 자유이긴 한데, '자유가 아닌 자유'일 것이다.

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고 그에게 마음을 쓰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타인이 걱정하고 있는 어떤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가능 자체를 그가 마음 쓰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²²⁾ 그러니까 단순히 타인의 걱정거리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훤히 밝혀주면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²³⁾ 다시 말해 그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인간 각자는 자기존재를 책임져야 하는 자유로운 자이며,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대신 할 수는 없다.²⁴⁾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타인의 일을 대신 해주어 타인의 염려를 빼앗는다는 것은 타인의 인간다움을 훼손하는 것이다. 타인의 본래적인 실존을 염려하는 것이 바로 타인이 고유하고 본래적인 자기 내지는 자유로운 자기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타인을 자유로운 자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자유로움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이다.²⁵⁾

그렇다면 타인의 본래적인 실존을 염려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타인과 맺는 진정한 관계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와 타인 모두 본래적인 자기를 상실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관계, 바로 이것이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이자 본래적인 결속성이다.²⁶⁾ 따라서 본래적이고 진정한 배려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실 이럴 때 타인은 '세인-자기'가 아니라 고유하고 본래적인 자기가

22) "...타인을 위해 그렇게 대신 뛰어들기보다는 차라리 타인의 실존적인 존재가능으로 타인에 앞서 먼저 뛰어드는 배려의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타인에게서 '염려'를 빼앗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로소 본래적으로 염려로서 되돌려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본래적인 염려, 다시 말해 타인의 실존에 관계하는...이러한 배려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그의 염려 안에서 투명해지고 그의 염려를 위해 자유롭게 되도록 돕는 것이다."(SZ, S.163)

23) 김동규, 「하이데거 철학의 멜랑콜리 : 『존재와 시간』에 등장하는 실존론적 유아론의 멜랑콜리」, 「현대유럽철학연구」 19, 한국하이데거학회, 2009, 11면 참조.

24) 권순홍, "불안의 실존론적 구성과 비본래성의 가능성", 「철학논총」 제78집, 새한철학회, 2014, 181면 참조.

25) 김동규, 전제논문, 111면 참조.

26) 그래서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결속성이 비로소 타인을 그의 자유에서 그 자신으로 자유롭게 내어주는 그런 올바른 사태성을 가능케 한다"(SZ, S.163)고 말한다.

되어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이 아닌 본래적인 실존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본래적인 실존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나 우리는 타인에 대해 '진정한 배려'를 행할 수 있고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은 대개 이 세상에서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격차성, 평균성, 평준화를 의식하고 마음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본래적인 자기에 의해 선택된 본래적인 실존방식에서 본래적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지는 고민스러운 문제다. 사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어떤 틀 속에서의 자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약 속에서의 자유, '자유'의 결손적 형태인 '자유'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법의 문제가 끼어들 틈은 없는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 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가능성'은 바로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의 강제적 측면이 이야기될 수 있는 자리도 바로 여기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또한 발생한다.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주체적인' 인간, 고유하고 본래적인 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세인-자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실존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법에 의해 처벌한다는 것이 가능한지는 고민해 볼 문제다.

물론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악행금지의 원칙'²⁷⁾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금했기 때문이다. 사실 법의 강제적 측면이야말로 법을 윤리 또는 도덕 등의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다양한 법 규제를 받고 살아간다. 그것도 국가의 개입과 강제에 의해서 말이다.

그런데 권혁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강제가 확대되고 강도 또한 강력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알듯이 학생

27) 물론 '악행금지의 원칙'은 소위 생명의료윤리에서 말하는 4가지 원칙 중 하나다. 그러나 이 원칙은 생명의료윤리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이다.

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가 아닌 정부가 정해주는 학교로만 진학해야 하고, 대학은 정부가 정해주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면 되고 또 어디에 투자하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규제 등등 말이다.²⁸⁾ 물론 이러한 것들은 '법'의 이름으로, '입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국가의 간섭 내지는 강제는 '법률제정'에 의한 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법치', 즉 '법'의 이름으로 국가(정부)가 행하는 것은 '법'에 의한 간섭 내지는 강제이리라.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리라. 그런데 알려져 있듯이 법치 내지는 법치주의는 소극적 의미의 법치인 '형식적 법치'와 적극적 의미의 법치인 '실질적 법치'로 나누어진다. 이때 법치를 법률에 따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 법치, 즉 법률의 내용과 목적을 문제 삼지 않고 단지 법적 절차와 형식만을 준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형식적 법치에 대해 '무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다.²⁹⁾ 따라서 형식적 법치에서 '법'이 '무법'이라면, 우리는 '실질적 법치'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 법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다. '법', '입법', '법치'는 '어떤 틀'로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옥죄는 세간적인 가치 내지는 세론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 진정한 자유, 스스럼없이 도인과 같이 행위 할 수 있는 자유는 나 자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니 고유하고 본래적인 나 자신의 존재가능성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양심의 소리 없는 부름을 받은 내가 그 양심의 부름을 인수하고 실존적 결단을 통해 본래적인 실존으로 진입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내지는 자유로운 행위는 인간의 본래적인 실존방식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내지는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28) 권혁철, "법과 입법의 구분과 의미", 「제도와 경제」 제2권 제1호,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 96면 참조.

29) 권혁철, 전계논문, 97면 참조.

2. 인간의 존재방식을 고려한 입법

앞의 이야기들을 고려하면 법치 또는 입법의 문제는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에서만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법 또는 법치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지을 가능성은 인간이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생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인간이 주체적인 인간인지 아닌지의 논쟁을 제쳐놓는다면 말이다. 심한 격차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인간이 남들과의 격차 때문에 남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들과의 격차성을 줄이고 늘리는 상황 속에서 타인에게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에서 인간이 죄지을 행위의 가능성이 사회가 문제여서 그런 것인지, 원래 인간이 문제여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사실 인간보다는 사회가 문제일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 비본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사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인간을 강제하고 간섭하는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회를 전제하고 있다. 이미 전제된 사회 속에서 법은 인간을 구속하고 강제한다는 말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말이다. 단지 죄지은 사람, 아니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전제된 사회를 유지하면 된다는 것 말이다. 사실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아니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법치를 위한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또한 매우 어려운 것이자, 전제된 사회 속에서의 정의는 다양한 정의 중 하나의 정의에 불과하다.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정의에 대한 대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대화에서의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가 바로 이미 전제된, 즉 유지되고 있는 그 사회의 정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강하고 힘 있는 자의 이익 말이다.³⁰⁾

어쩔 수 없이 법의 제정, 즉 입법의 문제는 이미 전제되고 유지되고 있는 현 체제 내지는 사회 속에서의 문제로 국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30) 플라톤 지음, 박종현 역주, 「국가」, 서광사, 2001, 82면 참조.

자 또한 그의 존재방식과 연관해서 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자가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그에 의해 제정된 법은 과연 어떠한 법일까? 고민스럽고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물론 우리는 법을 제정하는 자란 언제나 사람들 편에서 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니 해를 당하지 않을 삶을 위해,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문제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자.

어쨌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 내던져진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던져진 인간은 기투하면서 살아간다. 물론 이러한 기투의 행위가 비본래적일지 본래적일지는 그의 존재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법 제정과는 무관하게 말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어떤 사회라는 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라는 용어를 빌리면, 인간은 '사회-내-존재', 내지는 '법-내-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법을 어떻게 제정할 것이라는 점이라. 사회를 유지하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立法), 말 그대로 '법의 정립' 말이다. 도대체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전제되고 있는, 유지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것은 하이에크가 말하는 법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인 '법의 확실성'에 해당한다.³¹⁾ 법의 확실성은 법률이란 당사자들이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³²⁾ 물론 현대 사회에서 입법 문제는 삶의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 소위 '입법홍수'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범규범의 범람 현상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범규범이 범람한

31) 세 가지 조건은 '법의 일반성', '법의 추상성 또는 탈목적성', '법의 확실성'이다.(민경국, 「하이에크, 자유의 길」, 한울아카데미, 2007, 384면 이하; 권혁철, 전계논문, 98면에서 재인용)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법이 정의로운 규칙으로서의 법(권혁철, 앞의 글, 112면)인데, 이때 법의 일반성은 차별금지 원칙과 동일한 것으로서 개인과 사적 조직은 물론 국가까지도 법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법의 추상성 또는 탈목적성은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동기를 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권혁철, 전계논문, 98면 참조)

32)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그 결정이 법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누구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이상적인 확실성이다."(레오니, 브루노, 정순훈 역, 「자유와 법」, 자유기업원, 2000, 25면; 권혁철, 전계논문, 99면에서 재인용)

다면, 유지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숙지해서 살아가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아니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으로도 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 많은 법규범 때문에 말이다. 그래서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행위의 결과가 법을 위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법은 말로만 있는 법, 즉 유지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매우 상식적인 말이지만, 인간을 위한 법이 아니면 입법할 필요가 없다. 아니 인간의 존재방식과 연관된 법이 아니면 입법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사실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본래적인 실존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타인과 공존할 수 있다. 그를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강제는 인간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 정립된 법을 위반했을 때의 '죄' 말이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벌' 말이다. 물론 법의 이러한 강제적인 측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어떠한 법이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지는 그 법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인간을 강제하는 법 또한 인간이 제정한다. 이때 인간이 제정하는 모든 법은 특정한 종류의 인간을 전제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성, 범죄가능성, 사악함의 모습까지 포함하고 있다.³³⁾ 그래서 인간이 제정하는 모든 법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인간, 즉 법에 비쳐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고, 이러한 인간의 문제는 모든 법 이론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귀결점이 된다.³⁴⁾ 따라서 법을 제정할 때 우리가 언제나 고려해야 할 것은 인간의 문제다. 입법이 이렇게 인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입법은 언제나 인간의 존재방식, 그것도 본래적인 실존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인간은 원래 자유로운 자이자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아니지만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법이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방

33)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7, 443면. 법에서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종덕,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61호), 한국법학회, 2016.

34) 김종덕, 전계논문, 240면 참조.

식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상과 같은 것이리라.

셋째, 굳이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해하고 사회 유지를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 법치라면, 사회 변혁에 중심을 두는 법 제정이 훨씬 더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를 본래적인 실존 방식보다 더 나은 본래적인 실존 방식으로 이끌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칸트는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서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해결을 강요하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보편적으로 법이 지배하는 시민 사회의 건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민 사회의 건설은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류에 의해 가장 나중에 해결될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³⁵⁾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의 건설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게 쉽게 건설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칸트의 이 말들은 근대 시대의 사유의 틀인 ‘표상적 사유’ 방식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한마디 한다면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재방식에 의한 고려 속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고 인간을 본래적인 실존방식으로 진입하게 할 수 있을 때나 법의 지배에 의한 시민 사회의 건설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사실 칸트가 시민 사회의 건설을 주장할 때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문제가 개입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자유란 인간이 본래적인 실존 방식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본래적인 삶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35)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편역,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31면. 이 명제는 마치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의 건설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는 완전하게 달성될 수 없다. 그것은 사실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념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시민사회를 향해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할 ‘인류의 사명’이다. 그래서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라는 이념은 구성적인 것이 아니라 규제적인 것이다.(나종석, “공공성의 역사철학-칸트 역사철학에 대한 하나의 해석”, 「칸트연구」 제26집, 한국칸트학회, 2010, 81면 참조)

IV. 맺는 말

'법'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그것들 중 하나는 아마 '법의 여신상'이리라. 그런데 그 여신들은 대부분 두 눈을 감고 있거나 두 눈을 가리개로 가린 채 한 손에 양팔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이란 균형을 뜻하므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공평함을 지키겠노라고 법의 여신은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이리라. 그리고 법의 여신이 두 눈을 감고 있거나 가리개로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어떤 편견 없이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리라. 물론 이 여신상 이야기는 재판을 하는 법원과 관계된 말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여신상'의 뜻과 같이 아무리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입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법관의 존재방식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법에 의한 판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의 문제는 판결의 문제를 선행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 법 제정은 인간이 하는 일이다. 물론 법 제정의 목적은 흔히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질서 있는 사회 내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보여주었던 내용처럼 말이다. 그러나 입법에 문제가 있다면, 인간의 행복은 이미 물 건너가고 만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 만든 법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법의 지배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어떤 국가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또한 머나 먼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를 죽게 한 그리스 아테네의 상황과 같이 말이다.

그런데 대개 법에 있어서의 인간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범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본래적인 실존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물론 대개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이고 법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존재방식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단지 인간

을 결핍존재로 여기거나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방식 중 본래적인 실존 방식은 자유로움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자유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재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던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현존재(Dasein)’라고 명명 하는데, 이때 현존재란 존재자의 ‘존재의 진리’가 훤히 밝혀지는 ‘열린 장(das Offene)’에 있는 자로서 그 열린 장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음을 말한다. 인간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성적인 동물’이기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어깨동무하고 노는 이웃과 같은 자라는 것이다. 들녘의 꽃이란 우리가 피라고 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듯이 우리 인간도 본래적인 실존 방식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자유롭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지은 시가 생각난다. 그가 지은 「현-존재(Da-sein)」라는 시 가운데의 한 연을 보면서 글을 맺도록 한다.

“[인간이] 현-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자의] 존재를 노래하면서, 아득한 노래로부터 존재에게 오랫동안 자신의 본질을 감추고 있던 강력한 것을 고향으로 가져오는 것이지.”³⁶⁾

36)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 신상희 옮김, 「사유의 경험으로부터」, 길, 2012, 42면. 번역을 조금 수정했으며, []안 내용은 필자가 보완한 것이다. 여기에서 ‘존재’는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자 ‘고향’과 같은 것을 말하며, 인간이란 그런 존재를 노래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노래하는 존재사유에서는 타인과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을 해칠 가능성은 사라지고 없다. 인간이 본래적 실존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말이다.

참고문헌

- 권순홍, "불안의 실존론적 구성과 비본래성의 가능성", 「철학논총」 제78집, 새한철학회, 2014.
- 권혁철, "법과 입법의 구분과 의미", 「제도와 경제」 제2권 제1호,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
- 김동규, "하이데거 철학의 멜랑콜리: 『존재와 시간』에 등장하는 실존론적 유아론의 멜랑콜리", 「현대유럽철학연구」 19, 한국하이데거학회, 2009.
- 김종덕,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61호), 한국법학회, 2016.
- 나중석, "공공성의 역사철학-칸트 역사철학에 대한 하나의 해석", 「칸트연구」 제26집, 한국칸트학회, 2010.
- 레오니, 브루노, 정순훈 역, 「자유와 법」, 자유기업원, 2000.
-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 신상희 옮김, 「사유의 경험으로부터」, 길, 2012.
- 마크 A 래틀 지음, 권순홍 옮김, 「How to Read 하이데거」, 웅진 지식하우스, 2008.
- 민경국, 「하이데크, 자유의 길」, 한울아카데미, 2007.
- 박찬국,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의주의로 보는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사상」 제30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이기상-구연상, 「『존재와 시간』 용어해설」, 까치, 1998
-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편역,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7.
- 최종고, "법과 존재와 사유-법철학에 미친 하이데거의 영향-", 「현대유럽철학연구」, 한국하이데거학회, 2004.
- 플라톤, 박종현 역주, 「국가」, 서광사, 2001.
- 황경식, "자유와 간섭-자유성과 선의의 간섭주의", 「철학사상」 제1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1991.

대한변협신문, 2018.04.30. 기사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Frankfurt a. M.; Vittorio Klostermann, 1977.

국문초록

이 글은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고, 모색하길 희망하는 글이다. 사실 법의 문제 또는 입법의 문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긴밀하게 관계 맺고 있다면, 입법의 문제는 바로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 상황, 인간의 존재방식인 '실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아니 실존의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즉 인간의 존재방식인 비본래적 실존과 본래적 실존을 하이데거의 저술 『존재와 시간』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물론 존재론자인 그는 '법' 또는 '입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하이데거가 그리고 있는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에서의 입법의 방향과 본래적인 실존 방식에서의 자유와 관련된 입법 방향 말이다. 물론 이때 바람직한 입법 방향은 인간의 존재방식과 떼어 수 없는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법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이 법의 지배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서도 안 된다. 입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단지 인간을 결핍존재로 여기거나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간의 존재방식 중 본래적인 실존은 자유로움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자유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은 인간의 존재방식을 이해할 때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어

인간, 비본래적 실존, 본래적 실존, 입법, 법, 하이데거

Abstract

The Existence Way of Human Being and A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Mun, Dong Kyu*

This article seeks to find the direction of desirable legislation through the existence way of human being that Martin Heidegger speaks and hopes to find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through it. In fact, if the problem of the law or the issue of the legisl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at is a human being?', the issue of legislation should start with the existence way of human being(die Existenz) that lives in this reality. The issue of legislation should be done in the understanding of the existence way of human being. Thus, this article examines how human beings live in this world. In other words, this essay examines the non-original existence(die uneigentliche Existenz) and the original existence(die eigentliche Existenz) of human being through Heidegger's "Sein und Zeit". Of course, he as an ontologist does not address the issue of 'law' or 'legislation'. However, we can seek the direction of desirable legislation by understanding of the existence way of human being that Heidegger shows. For example, we can look a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in the non-original existence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related to freedom in the original existence. Of course, a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at this time should be for human beings. In fact, human beings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laws of human beings, nor should they live in this world through the rule of law. W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legislation is not the possibility of human crime but how human beings live. It is not right to judge human beings as deficient beings or to enact laws by looking at human negative figures. Human beings are inherently free. Human beings

* Sunchon Univ.

are human beings because they are free. Thus, we can be made a desirable legislation when understanding how people exist.

Key Words

human beings, the non-original existence, the original existence, legislation, law, Heidegger